

2004. 2

條例案審查報告書

-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-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產業建設委員會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	2004. 2. 5	2004. 2. 6	2004. 2. 7	2004. 2. 7	지역개발 과장
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	2004. 1.29	2004. 2. 3	2004. 2. 7	2004. 2. 7	보건과장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충주시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규모, 도시계획위원회운영,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의 내용중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과 2004. 1. 20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(대통령령 제18240호)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하도록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골자

- 개발행위허가규모를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보전관리지역은 1만m²미만에서 5천m²미만으로 강화하고, 농림지역은 1만m² 미만을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적용을 받음으로서 국토의

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3만m² 미만으로 완화(안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)

-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한을 위원장에게 주게되어 있는 조항은 상위법령의 저촉소지가 있으므로 삭제(안 제66조)
- 관리지역내에 건축행위 제한중 별표 23의 각 호 내용에는 숙박 시설을 건축 할 수 없음에도 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한 문구가 표기되어 있어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“숙박시설” 문구 삭제(안 [별표 23] 본문)
-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완화됨에 따라 반영([별표 16] 제8호)
-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는 농·임·축산·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시설을 제한하였던 것을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허용됨에 따라 반영([별표 19] 제11호, [별표 23] 제11호)

나.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안

1) 제안이유

- 2002. 6. 4일 총리주재 호국보훈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을 추진하기로 확정(2003. 7. 16)함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시킬 수 있도록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) 주요골자

- 용어의 변경(안 제4조 및 제5조)
-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대상의 구체적인 자격범위 규정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- 충주시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7월 18일 조례 제615호로 공포하여 운영하던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 시행코자함
- 개정되는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토지이용중 “보존관리지역”은 1만m²미만에서 5천m²미만으로 강화하고 “농림지역”은 1만m²미만을 농지법,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적용받던 사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3만m²미만으로 완화코자 함에 있으며
-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운영방법의 강화와 각 조항에 오해소지가 있는 문구는 삭제하여 민원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음
- 따라서 각계 시민의 의견(용산동 김종석외 31인) 4건을 모두 반영하는 등 시민의견 수렴에 노력한점이 있으나 더 많은 이해당자들의 의견수렴에는 미흡하다 하겠음
-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많은 시민들의 이익과 이해 당사자들의 조례안과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것으로 예상 폭넓은 규제완화 등은 심도있게 검토 하여야 할 것임

나.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-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제102호로 제정되어 5회의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 사유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“노령국가유공자”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개정 추진하는 것임

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[별표 16] 제8호 나목 중 “시로”를 “관내에서”로 한다.

〈수정안 대비표〉

개정안	수정안
[별표 16]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	[별표 16] -----
수 있는 건축물(제31조제16호관련)	-----
8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	8. -----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	-----
가. (생략)	가. (개정안과 같음)
나.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	나. -----
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	-----
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	-----
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<u>시로</u>	<u>관내에서</u>
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	-----
공장	---

4. 질의.답변 요지

가.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[별표 19] 11호중 농업, 임업, 축산업, 수산업용을 제외한다는 이유는?

○ 답변 : 시행령에 이미 허용돼 있으므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님

나.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무지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미등록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치계획은?

○ 답변 : 보훈지청과 협의 하겠음

5. 심사결과

-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: 수정의결
-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: 수정의결

6. 붙임

-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-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 끝.

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등,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등,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, 참전유공자,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

〈수정안 대비표〉

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보건 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.-3. (생략) 4. 국가유공자와 그 <u>유족</u> , 독립유공자와 그 <u>유족</u> ,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<u>유족</u> , <u>고엽제후유의증환자</u> 및 <u>고엽제후유증 2세환자</u> , 참전유공자, 20년이상 장기 복무제대군인으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	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--- ----- ----- ----- 1.-3. (개정안과 같음) 4. ----- <u>유족등</u> , ----- --- <u>유족등</u> , ----- <u>유족등</u> , <u>고엽제후유증환자</u> , <u>고엽제후유의증환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5.-6. (개정안과 같음)
5.-6. (생략)	